

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⑤   | 주 소    | /전화(     )○○○○ /전송(     )○○○○ |
| ○○과 | 과장 ○○○ | /서기관, 사무관 또는 주사 ○○○ /담당 ○○○   |

발 신

제 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

[illegible]

## 작성 방법

- ☐ ① 관리번호: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☐ 인적사항(납세의무자)란
- ③ 주민등록번호: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④ 연락처: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⑤ 현주소(신고 당시 주소):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☐ ⑦ 귀속연도: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.
- ☐ ⑧ 세무서(담당자):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.
- ☐ ⑨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, ⑩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.
- ☐ ⑪ 구분: "당초"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, "경정"은 결정,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.
- ☐ 양도자산 내역란
- ⑫ 양도일: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.
- ⑬ 양도자산 종류: 토지, 건물, 회원권, 주식,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⑭ 양도물건 및 소재지: 양도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기재하고, 회원권 등은 양도대상 물건 내용을 기재합니다.
- ☐ ⑰ 발행연월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,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.
- ⑱ 발행번호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,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☐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
- ⑳ 원천징수세액공제: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.
- ㉑ 가산세계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불성실 · 납부지연 ·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㉒ 본세: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.
- ㉓ 무신고 등 가산세: 해당 가산세 중 ㉔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, 신고불성실 ·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☐ 환급금 신고계좌란
- ㉕ 은행코드: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.
- ㉖ 계좌번호: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.